



김용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02. 11. 22 선고 99나18970판결과 그 의의

- 적정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가
감사조서로 남아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승소의 비결이었다 -

서울 고등법원 민사11부는 재판 2002.11.12,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낸지 얼마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
도 회계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지는 지
난호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번호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필자에게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
한 집필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 ◆

1. 처음에

2002. 11. 22. 오전 10시 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금만 5억원 또는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피고들^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체증이
확 가시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회계사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할까? 회계사님들 가슴에 쌓인
체증의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 기록을 꺼내어 소장의 법원접수인을 확인하였더니 1996. 10. 10.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만큼이나 큼 기쁨이
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은 전적으로 회계사들의 행동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졌듯이 회계사들은 외부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감사조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감사조서의 내용을 대리인 및 법원에 설득하면서 사실상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날
의 기쁨은 전적으로 회계사들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회계지식이 별로 없고 소
송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지만, 함께 소송을 수행한 김동석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
진 회계전문가로서 회계 관련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법원에 전달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습니다.^②
그리고 소송진행에 운이 따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운이란 바로 실체적 진실을 끈질기게 추구
하는 재판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난해한 회계서류의 전반을 검토하여 구체
적인 회계감사내용에 대하여 끝까지 진실을 탐지하는 재판부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었고, 재판부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

“적정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가 감사조서로
남아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승소의 비결이었다
는 점입니다. 아무리 정당
하게 감사절차를 진행하였
어도 감사조서가 없었다면
감사조서에 대한 감정이라
는 방어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 (02)316-4029, E-mail: yhkim@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1996. 9.경 1심 소송 담당, 1998. 8. 해외유학, 2000. 2. 항소심 담당

〈주1〉 회계사이신 김동찬, 현종현, 장병모, 김영수 4인

〈주2〉 1심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위 회계사 4인을 대리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김동찬, 현종현 회계사를, 김동석 변호사는 정병
모, 김영수 회계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는 회계감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기쁨이 채가지지 않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필자의 경력이 일천하여 판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학술적인 평석을 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일 즉, 그동안의 사건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위로하면서 글을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소송수행을 하며 겪은 일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여 보고자 합니다.

2. 사건수입

1996년도에 이 사건을 수입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시는 이종남 원장님이 공인 회계사회회장 등을 역임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들을 지도하실 때 이 사건 1심사건을 수입하였습니다. 필자는 그 전에 약 30건 정도의 회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외부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것은 아니었고, 증권거래법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인 사건들이었습니다.⁽³⁾ 따라서 필자로서도 외부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밝혔듯이 필자는 회계지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계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필자는 법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송수행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소송 사건이 의뢰인과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계사건의 경우 전문가인 의뢰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당시 조선생명)는 삼우기술단에게 1994. 11. 30.자로 20억원(당일 삼우기술단으로부터 10억원의 단체퇴직보험금 받음), 1995. 5. 31.자로 10억원(당일 삼우기술단으로부터 10억원의 단체퇴직보험금 받음)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 6. 13. 삼우기술단에서 부도를 내었고 그 결과 미회수금은 약 19억원이 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미회수금에 대하여 회계사들이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금액은 일부청구금액인 5억원이었고, 1993회계년도 및 1994회계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원고회사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삼우기술단이 우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용대출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부외부채가 많아 삼우기술단이 부도에 이르렀으니, 부외부채감사절차를 게을리 한 외부감사인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우기술단에 대한 1993회계년도 회계서류에 대한 대한 외부감사는 두이합동회계사무소가 수행하여 한정 의견을 내었고(대표 김동찬 회계사, 참여 현종현 회계사 등 3인)⁽⁴⁾, 1994회계년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삼원합동회계사무소(대표 김명수 회계사, 정병모, 김영수 회계사 참여)가 수행하여 한정 의견을 내었습니다.⁽⁵⁾

〈주3〉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상 안 때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으로 대부분 사건들은 방어가 되었습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규정이 민법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규정(안 때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과 실제적인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2건 정도가 대법원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4. 방어방법의 수립

방어방법을 수립하고자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법규정을 검토하였는데, 당시 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i) 감사업무에 참여한 회계사(외감법제17조제3항, 제1항)
- (ii) 제3자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을 것(같은 제2항, 신뢰인과관계의 존재)
- (iii)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또는 허위의 기재(같은 항)
- (iv) 제3자에게 상당한 인과관계있는 손해 발생(같은 항, 손해인과관계의 존재)
- (v) 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외감법제17조제5항)

위의 요건 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로서 감사보고서에 날인을 한 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

(ii)의 요건과 관련하여, 과연 원고회사가 감사보고서상 삼우기술단의 신용을 믿고 신용대출을 해준 것인가 아니면 단체 퇴직보험금을 격기로 하여 담보대출을 한 것인가의 쟁점(외감법상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요건 즉 신뢰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iii), (iv)의 요건과 관련하여, 과연 부외부채감사절차가 적정하였는가의 쟁점.

그 외에도 1993회계년도 외부감사인인 1994회계년도 외부감사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등 다수

의 쟁점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쟁점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역시 부외부채절차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1993회계년도 감사보고서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하여 이미 외부감사절차가 적정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원고회사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신용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었고⁽⁶⁾,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부채감사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증거로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조서에 대한 감정은 1심에서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1심에서 잘못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감사조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 대표자 책임 부존재

원래 1심에서는 삼원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자도 피고였으나, 1심에서 외부감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변론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외감법상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단지 대표자로서 기명날인을 한 경우 외감법상 책임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두이합동의 대표자인 김동찬 회계사는 1심에서 감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여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다른 회계사들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단지 두이합동의 대표자로서 기명날인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⁷⁾

〈주4〉 판결문상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사의견: (회사의 공사 수입금액은 공사진행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10억 2,100만원이 과대 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억 1,20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자산은 10억 2,100만원 과대표시, 부채는 2억 1,200만원 과소표시되었다.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12억 3,300만원, 수정 후 이월 이익잉여금이 12억 3,300만원 각각 과대표시되어 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의 회사의 1993.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날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및 재무상태 변동표는 소의 회사의 1993.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같은 날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 성과 그리고 이익 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나) 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 ① 소의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경상 이익: 3,019,469,417원 당기 순이익: 1,720,417,053원 ② 위 감사의견에 따른 수정 재무제표 경상 이익: 1,786,052,123원 당기 순이익: 486,999,764원

〈주5〉 판결문상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사의견: (회사는 당기에 용역 수입 금액을 1,021,443,000원 과소계상, 퇴직급여 충당금을 569,971,235원 과소상계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보다 부채가 569,971,235원 과소표시, 자본이 569,971,235원 과대표시되었다.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663,446,059원이 과소표시되었고, 수정 후 이월 이익 잉여금이 1,233,417,294원 과대표시되어 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의 회사의 1994. 12. 31. 현재의 대차 대조표와 같은 날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및 재무상태 변동표는 소의 회사의 1994. 12. 31. 현재 재무 상태와 같은 날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 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나) 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 ① 소의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② 경상 이익: 2,967,274,450원 ③ 당기 순이익: 1,614,633,981원 ④ 위 감사의견에 따른 수정 재무제표 ⑤ 경상 이익: 3,630,720,509원 ⑥ 당기 순이익: 2,278,080,040원

〈주6〉 신뢰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로는 서울지방법원 2000. 4. 20. 선고 99가합20099 판결이 있습니다. 동 판결의 원고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오피스텔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사가 부도나고 공사가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단지 대표자였다는 점을 소송과정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두이합동의 대표자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명서 제출, 당시 외부감사에 참여한 회계사의 법정증언 등의 방법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보다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출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정리한 다음 감사조서의 업무분담표(work assign) 원본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조서의 원본을 받아보니 연필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모든 감사조서를 연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업무분담표 역시 연필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제3자인 재판부에서 볼 경우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미 오래된 종이라 탈색이 되어 있는 등 원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 대표자 본인이 직접 외부감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였고 참여 회계사의 진술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감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김동찬 대표자의 입장에서 판결 결과에 더욱 기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9. 2. 24. 1심에서 원금 5억원의 판결 및 가집행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2. 8월경 대표 김동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전에 경락이 되는 경우 부동산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판결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경매일정을 확인하면서 조속히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란 대리인인 저로서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부동산이 경매 중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되도록이면 빨리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보고서가 나온 긴급한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문을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주7〉 판결문상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합동회계사무소에 의한 외부 감사의 경우 감사의 주체인 감사인은 합동회계사무소이고, 회계 장부 서류 재무제표의 열람 등 요구권 등 감사에 필요한 권한 역시 합동회계사무소에 부여하고 있으나(제3조 제2호, 제6조, 제7조), 실제 감사 업무는 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감사업무를 배당받은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수행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인 합동회계사무소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불과함을 고려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실 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합동회계사무소는 위와 같이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휘 감독이란 있을 수 없고, 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 공인회계사 역시 합동회계사무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그 일반사무를 통할함과 아울러, 위 일반 사무에 관하여 구성원인 공인회계사를 지휘 감독할 뿐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만큼, 직접 배당받은 감사 업무가 아닌 다른 공인회계사의 감사 업무에 대하여 관여할 여지가 없는 점, 셋째, 공인회계사법(1997. 1. 13. 법률 제52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18 제6항, 제12조의9에서 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합동회계사무소가 감사인으로 된 감사보고서에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감사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개개인인 아닌 감사인인 합동회계사무소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대표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법 제17조가 정한 손해배상책임 등 그 감사보고서의 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 1996. 12. 30. 법률 제5196호로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에서 합동회계사무소를 제외하고 있다), 넷째, 외부감사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라고 규정하지 않고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 공인회계사로서 감사보고서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대표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감사 업무를 직접 맡아 수행하거나 그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감사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감사의견을 비롯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신뢰인과 관계의 존부

원고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신용대출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이고 감사보고서를 믿고 신용 대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로 지적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원고가 먼저 삼우기술단에 전화하여 단체퇴직보험금에 가입할 경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
 - (ii) 실제로 1994. 11. 30. 1차로 금 20억원을 대출한 일자에 삼우기술단이 금 10억원의 단체퇴직보험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 (iii) 실제로 1995. 5. 31. 2차로 금 10억원을 대출한 일자에 삼우기술단이 금 10억원의 단체퇴직보험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 (iv) 삼우기술단에 부도 발생 후 단체퇴직보험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한 결과 약 8.9억원의 미회수대출금이 남게 되었고, 삼우기술단의 회사정리신청 당시 원고가 법원의 조회에 대하여 약 8.9억원의 미회수대출액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
 - (v) 서초세무서도 삼우기술단의 단체퇴직보험금 가입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한 사실
 - (vi) 감사보고서상 삼우기술단의 재무제표가 일정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정 의견을 기재하였고 또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삼우기술단의 재무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고 따라서 신용대출을 해줄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구체적인 분석 생략)
 - (vi) 이 사건 대출시 단체퇴직보험금 외에 별 다른 물적담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 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i) 조선생명의 대출업무규정에 대출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 최근 2년의 결산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조선생명은 대출과정에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기재내용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 (ii) 각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조선생명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을 중요한 대출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iii) 조선생명은 이 사건 대출시 2인의 연대보증 외에 다른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므로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볼 수 없다는 점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1심판결의 판단은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의 판단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신뢰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즉,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i) 원고의 대출업무규정상 감사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 중의 하나를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시 감사보고서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출시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출과정에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기재내용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는 점
- (ii) 원고는 단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을 믿고 이용하였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입증만으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각 신용평가기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삼우기술단의 신용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
- (iii) 1심판결은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출은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데,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그것이 불법이라는 점과는 전혀 차이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1994. 12. 31. 당시 삼우기술단은 삼성생명 및 대신생명에 대하여도 대출금 대 단체퇴직보험금의 비율이 1:1 정도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점)

항소심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부 감사인들이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적절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7. 부외부채의 부존재

원고는 삼우기술단의 회사정리신청서를 근거로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회사정리신청서에는 회계서류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및 그에 첨부된 수정 재무제표가 삼우기술단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제출된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부채(자본),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 당해 회계연도 재무 결산내역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청서는 신청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신청자의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하여 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외부감사인들이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를 하였다는 주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993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정기감리절차를 진행하여 외부감사절차가 적정하였고 감사보고서상의 감정의견도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외부감사는 부정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감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본감사의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한정의견을 내었다는 점, 감사조서를 제출하고 감사조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심판결은 회사정리절차신청서를 근거로 삼우기술단에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는 판단 및 외부감사인들이 감사과정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회사정리신청서상 부외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회사정리신청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외부감사인들의 감사절차가 적정하였다는 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삼우기술단의 회사정리신청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회사정리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사정리신청 당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삼우기술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 내었고, 삼우기술단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삼우기술단에 부외부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고, 원고가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자를 추적하여 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채권이 삼우기술단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삼우기술단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삼우기술단의 자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등의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에서 제출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상에 기재된 소외회사의 사채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자회사의 부채 및 그 이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 신청사건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감사보고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8. 외부감사절차의 적정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하였다는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면책가능한 쟁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조서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의 초점은 부외부채에 대한 외부감사절차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감정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감정인^⑧은 약 1년간 감사조서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다음, 1993회계년도 및 1994회계년도의 부외부채에 관한 외부감사절차가 적정하다는 감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원고측은 재차 감정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감정인은 재차 감정보고서가 정당하다는 회신을 하면서 또 다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여 원피고간 쟁점의 대상이 되는 부외부채 모두에 대하여 장문의 질문사항을 만든 다음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인에 대한 감정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감정인은 법정에 감정증인으로 출석하여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부외부채에 대한 감정절차가 적정하였다는 점, 원고가 문제를 삼은 부외부채들은 감사조서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문외한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전문분야에 대하여 속시원히 파헤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때 외부감사인들이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감사보고서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

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절차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 참조).

9. 글을 마치며

사건의 진행내용을 쟁점별로 서술하여 보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재차 느낀 점은 결국 적정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가 감사조서로 남아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승소의 비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감사절차를 진행하였어도 감사조서가 없었다면 감사조서에 대한 감정이라는 방어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즈음 들어 부쩍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회계소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그 근거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회계소송은 어렵습니다. 회계라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비전문가들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회계사건에서 회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계의 기초부터 차근 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적정'이라는 표현이 감사대상회사가 우량한 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회계감사가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또는, 부정적발책임이 감사인에게 없다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설득하여 나가야 합니다.^⑨

그리고 분쟁예방적인 조치들도 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적정이라는 표현을 '기업회계기준에 부합' 정도로 서술한다거나, 감사보고서가 기업의 우량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기업에 대한 판단은 활용자의 몫이라는 점을 감사보고서 표지에 크게 기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회계소송은 빈번화, 대형화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고 또한, 회계사책임론에 대한 긍정적 변화의 조짐^⑩도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건을 함께 풀어가며 좋은 결과를 맺게 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㉔

〈주8〉 대성회계법인 권오형 대표회계사

〈주9〉 최근 이러한 점을 근거로 외부감사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는 서울지방법원 2000. 8. 18. 선고 98가합72598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8. 선고 2000가합15471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은 감사대상회사의 종업원이 자금횡령을 한 것을 외부감사절차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10〉 긍정적인식의 예로는 외감법상 회계사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02. 9. 26.자 결정),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준용되는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02. 10. 11.자 결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